



유럽감독당국, 은행·보험 감독 스트레스 테스트에 ESG 반영 가이드라인 최종본 공개(2027.1.1. 시행)

2026.01.26

2026년 1월 8일 유럽연합(EU)의 유럽감독당국(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¹은 은행·보험 감독 스트레스 테스트에 ESG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최종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EU 각 회원국 감독당국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운영하여 온 은행·보험 감독 스트레스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ESG 요소를 반영할 때 적용할 원칙, 방법론 및 운영 요건을 제시합니다.

1. 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EU)의 자본요구지침(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Directive 2013/36/EU)² 및 Solvency II(Directive 2009/138/EC)³ 개정으로 유럽감독당국에 부여된 역할을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 즉, EU 차원에서 은행·보험 감독 실무에 ESG 리스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유럽감독당국이 공통 기준(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본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기보다 각국 감독당국이 ESG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할 때 평가 방식의 일관성을 높이는 표준으로 기능합니다.

2. 적용 일정

본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8일 최종본이 공개되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유럽감독당국은 향후 본 가이드라인 번역본을 공개할 예정이며, EU 각 회원국 감독당국은 번역본 공개 이후 2개월 이내에 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EU 각 회원국 감독당국이 반드시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준수 사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comply or explain).⁴

3. 주요 내용

(1) 중요성 평가를 통한 ESG 리스크 식별

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EU 각 회원국 감독당국이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EU 각 회원국 감독당국은 모든 ESG 요소를 다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 평가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ESG 관련 리스크를 먼저 파악한 후 그러한 리스크를 중심으로 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리스크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산 포트폴리오, 지역별·산업별 노출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초기 단계에서는 기후를 포함한 환경(E) 리스크를 우선 다루고, 이후 데이터와 모델이 갖춰지는 속도에 맞춰 사회·거버넌스(S·G) 리스크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스트레스 테스트의 두 가지 트랙 구분

EU 각 회원국 감독당국은 (가) 단기(최대 5년) 트랙에서는 기존 스트레스 테스트처럼 자본·유동성·손실흡수능력 등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되, ESG 요인이 손실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함께 반영해야 하고, (나) 장기(최소 10년) 트랙에서는 탄소 규제가 크게 강화되거나 기후 재해가 빈번해지는 등 여러 상황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간 버틸 수 있는지 평가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3) 시나리오와 산출 방식에서 '공신력, 정합성, 설명 가능성' 확보

EU 각 회원국 감독당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녹색금융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되,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적 변수(macroeconomic variables)를 분석하고(breakdown) 시나리오의 내부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원국 감독당국은 가능하면 (i) 리스크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중첩적인 효과(compound risks)와 (ii) 최초 발생한 이후의 간접적이고 증폭된 2차 효과(second-round effects)도 반영하거나, 반영이 어렵다면 별도 보완 분석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산출 방식은 Top-down(감독당국 산출)·Bottom-up(금융회사 산출)·혼합형 중 선택할 수 있으나, 회원국 감독당국은 선택한 방식에 맞춰 최소 기준을 제시해 결과의 편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ESG 스트레스 테스트 산출 방식 비교]

구분	Top-down (감독당국 산출)	Bottom-up (금융회사 산출)	혼합형
산출 주체	감독당국이 산출을 주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출	감독당국 산출과 금융회사 산출을 함께 활용
핵심 목적/지향점	기관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감독당국이 방법론을 통제하기 쉬움	금융회사별 포트폴리오 특성과 세부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반영하고, 내부 역량 제고를 촉진	비교가능성과 정밀성 사이에서 현실적인 균형을 추구
장점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쉬워 결과 비교가 용이하고, 산출 방식에 대한 감독당국의 통제가 강화	금융회사가 보유한 내부 데이터와 모델을 활용해 세부 반영이 가능하며, 자체 평가 역량을 축적	포트폴리오/리스크 유형에 따라 적합한 방식의 장점을 조합
유의점	금융회사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	기관별 산출 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감독당국이 방법론 프레임워크와 기대 수준(비례성	어떤 영역을 어느 방식으로 산출할지(포트폴리오/리스크 유형별) 설계가 중요하며, 일관성 확보 장

		포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치가 필요
--	--	-----------------	-------

(4) 운영요건 및 테스트 결과 활용

본 가이드라인은 계산법뿐 아니라 조직·데이터·품질관리 체계를 함께 요구합니다. EU 각 회원국 감독당국은 ESG·스트레스 테스트·감독 실무를 이해하는 인력과 데이터/IT 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며, 금융회사에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되 감독의사결정 일정과 맞물리도록 프로세스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감독당국은 대리값·추정·전문가 판단을 허용할 수 있지만, 그 대신 품질보증(QA) 절차(벤치마킹, 교차검증 등)로 결과의 신뢰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와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dialogue)를 통해 기대치(expectations)와 쟁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는 리스크 평가·자본적정성 검토·전략 논의 등 감독 프로세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유럽감독당국의 ESG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ESG 금융감독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록 유럽 역내 적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할 때 유럽 외 지역 감독당국도 ESG 관련 감독기준 제정시 이 기준을 참고하거나 유사한 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회사는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등에 기반한) 전환리스크(transition risk)·(자산 위치 등에 기반한)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산업 노출 등 핵심 데이터의 정의와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시나리오 분석과 품질보증(QA) 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산출 결과뿐 아니라 산출 과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럽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2027년 본 가이드라인 시행 시점에 유럽 금융회사로부터 요구받을 수 있는 정보를 단계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외의 기업 역시 향후 금융기관의 ESG 리스크 평가가 더 세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배출·전환계획·사업장 위치 기반 취약성 정보를 일관된 기준과 근거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자료 요청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¹ 유럽감독당국(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s)은 유럽연합(EU)의 3대 금융감독기구로,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EIOPA)을 통칭하며, EU 역내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관된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 감독기관의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² 자본요구지침(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Directive 2013/36/EU)은 EU의 은행 및 투자회사에 대한 활동 인가 및 건전성 감독 체계를 정하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 제100조(4)는 ESG 위험 스트레스 테스트에 일관성, 장기적 고려사항 및 평가 방법론에 관한 공통 기준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유럽감독당국이 공동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 인용됩니다.

³ Solvency II(Directive 2009/138/EC)는 EU의 보험 및 재보험 사업의 개시 및 수행(인가·운영)에 관한 감독 체계를 정하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 제304c조(2) 및 (3)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체계를 통해 유럽감독당국이 ESG 위험 스트레스 테스트에 공통 기준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공동 지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특히 사회·지배구조(S·G) 관련 위험을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요구합니다.

⁴ EU 각 회원국 감독당국이 번역본 게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유럽감독당국에 통지가 없을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각 회원국 감독당국이 통지한 내용은 유럽감독당국 웹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관련구성원

송수영

변호사

02-316-1636

sysong@shinkim.com

최석

변호사

02-316-1758

schoi@shinkim.com

김명서

전문위원

02-316-1693

msekim@shinkim.com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02-316-4317

yichoung@shinkim.com

유민석

변호사

02-316-1786

msyu@shinkim.com